

대구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나2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나222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3. 21 선고 2023가소5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3. 10. 12.

판결선고 2023. 11. 9.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3. 21. 선고 2023가소5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가소159, 대구지방법원 2022나522), ‘피고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하였지만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환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피고가 수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거절하다가 늦게나마 2017. 1. 17. 150만 원, 2017. 2. 1. 200만 원을 입금해주었는데, 피고가 딸인 C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35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화가 나서 그런다고 착각을 하고 2017. 2. 20. 350만 원, 2017. 3. 2. 1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착오로 피고에게 입금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입금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동일한 송금 사실을 두고 그 경위 사실을 계속 바꾸어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착오로

피고에게 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딸과 교제한 사이이고, 피고의 딸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피고의 딸은 평소 피고의 계좌를 사용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명목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손윤경, 판사 최서은, 판사 김정일